

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				처리기간		
				○관광숙박업: 12일 ○관광객이용시설업: 15일 ○국제회의시설업: 14일		
신 청 인	① 성 명		② 생 년 월 일			
	③ 주 소	(전화 :)				
④ 상 호 (명 칭)						
⑤ 업 종						
⑥ 승 인 연 월 일		. . .				
⑦ 건 설 장 소						
⑧ 용 도 변 경 내 용		층 별	변 경 전		변 경 후	
			용 도	면적(m ²)	용 도	면적(m ²)
「관광진흥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						
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
※ 구비서류 1. 변경사유서 2부 2.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(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각 2부				수수료		
				50,000원(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)		
3.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·내장·방화·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(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2부						
4.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항제1호 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		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